국토교통부		보도설명자료					
		배포일시		2020. 2. 18.(화) / 총 2 (본문2)			
	규제개혁 법무담당관	담 당	자	·과장 윤종수, 서기관 이경재 • ☎ (044) 201-3224, 3229			
국토교통부	주택정책과	담 당	자	·과장 이명섭, 사무관 유용일 • 🗗 (044) 201-3317, 4089			
	건설산업과	담 당	자	·과장 박정수, 사무관 임종채 • ☎ (044) 201-3538, 3542			
보 도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				

##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법령 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.

- < 관련 보도내용(뉴스1, 2.18.) >
  - ◈ 건설사 퇴직 임직원이 분양가심사위원? .. "부패소지 법령 고쳐라"
    - 건설사 퇴직 임직원의 분양가심사위원 위촉 가능(주택법 시행령), 검사기관 평가위원회 민간평가위원의 무제한 연임 가능(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) 등 권익위, 지난해 제·개정 법령 113개에서 부패유발요인 335건 찾아 개선권고
- □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분양가심사위원회와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평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부패영향평가 등 입법절차를 거쳐 주택법 시행령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.
- □ 먼저,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('19.10.22)하여
  -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등록사업자\*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사람 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
    - \*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
  - 건설사 임직원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심사 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문제를 차단하였으며,
  -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도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도록 하여 분양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.
    - \*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직위 및 주소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

	아울러,	건설기	계관리	법 시형	행규칙을	을 개기	정('19.3	3.19)하여	म्		
0	타워크	L레인 >	검사기관	의 부	실 여니	부와 -	운영	실태를	평가	하는	평가
	위원회	의 임기	기를 2년	으로 さ	하되, 5	두 차려	#만 <sup>9</sup>	연임할	수 있	도록	제한
	하는 '	등 위원	회 운영	의 부	패유발	요인	을 사	·전 차단	간하였	습니다	7.

앞으로도	국토교통부	는 법령	제·개정	과정을	통해	법령상의	부패
유발요인이	] 있는지를	지속적으	으로 검토	, 개선해	나갈	계획입니	다.